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6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4항)

- 1)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55조제24항1호)
- 2)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조례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55조제24항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2. 3. 21.~4. 11.)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u></p> <p><u>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u></p> <p><u>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홍명순(02-2133-8411)